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3. 18.
제 안 자 : 최재옥 위원외

1. 수정이유

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의 정비와, 불명확한 각 호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에 따라
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골자

○ "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"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삭제하고,
○ 지역개발과 소관 제6호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사무 중
- "도시기반시설" ⇒ "기반시설"로
- "도시계획 결정"은 ⇒ "도시관리계획의 결정"으로
○ 지역개발과 소관 제7호
- "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"를
⇒ "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"로
○ 지역개발과 소관 제7호 사무 중 근거법령을
⇒ "동법 제30조 제5항 및 제6항,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"으로
○ 지역개발과 소관 제10호
- "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"를
⇒ "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, 변경, 폐지 및 이행담보, 열람 및 고시"로 수정하고자 함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「제1조, 제2조제4항 및 제5호중 "건설종합본부장"을 각각 "종합건설사업소장"으로 한다」를 삭제한다.

안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 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6호 중 "도시기반시설"을 "기반시설"로, "도시계획 결정"을 "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고,

제7호 "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"를 "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"로 하고, 근거법령 "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"을 "동법 제30조 제5항 및 제6항,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"으로 하고,

제10호 "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"를 "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, 변경, 폐지 및 이행담보, 열람 및 고시"로 한다.

안 「별표4의 권한위임사무중 총무과 소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」를 삭제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, 군수, 증평출장소장,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, 소방서장 및 충북과학대학장, 지방공무원교육원장, 농업기술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종합건설사업소장, 산림환경연구소장,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 건설종합본부장,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
제2조(권한위임사항) ①~③ (생략) ④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충북과학대학장, 지방공무원교육원장, 농업기술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종합건설사업소장, 산림환경연구소장,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같다. ⑤~⑥ (생략)	제2조(권한위임사항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건설종합본부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⑤~⑥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임처리 금지) 시장, 군수, 증평출장소장,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, 소방서장 및 충북과학대학장, 지방공무원 교육원장, 농업기술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종합건설사업소장, 산림환경연구소장,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.	제5조(위임처리 금지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 건설종합본부장,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[별표1]

개정안				수정안			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	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지역개발과	1-5	<생 략>		지역개발과	1-5	<개정안과 같음>	
	6	○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(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)	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		6	○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(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)	<개정안과 같음>
	7	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	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		7	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	동법 제30조 제5항 및 제6항,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
	8-9	<생 략>			8-9	<개정안과 같음>	
	10	○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	동 법 제88조 내지 제91조		10	○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, 변경, 폐지 및 이행단보, 열람 및 고시	<개정안과 같음>

[별표1]

개정안					수정안				
대상실과	일련번호	사무명	위임대상기관	근거법령	대상실과	일련번호	사무명	위임대상기관	근거법령
총무과	1~4	<생략>			총무과	1~4	<현행과 같음>		
	5	○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본부내 전보권	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	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		5	○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	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	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
	6~7	<생략>				6~7	<현행과 같음>		